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

1. 개정시행(예정)일: 2020. 12. 10

2. 개정 내용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<b>제1조(목적) ( 생 략)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( 생 략)</p> <p>1. ~ 5. (생 략)</p> <p>6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가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</p> <p>나.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<b>공인인증서</b></p> <p>다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</p> <p>라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</p> <p>마.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</p> <p>7. ~ 18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b>제3조(적용되는 거래)~제4조(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) (생 략)</b></p> <p><b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</b>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</p>	<p><b>제1조(목적) ( 좌 등)</b></p> <p><b>제2조(용어의 정의)</b></p> <p>① ( 좌 등)</p> <p>1. ~ 5. (좌 등)</p> <p>6. “접근매체”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.</p> <p>바. 은행이 제공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</p> <p>사.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또는 <b>인증서</b></p> <p>아. 은행에 등록된 이용자 번호</p> <p>자. 등록되어 있는 이용자의 생체정보</p> <p>차.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밀번호</p> <p>7. ~ 18. (생 략)</p> <p>② (생 략)</p> <p><b>제3조(적용되는 거래)~제4조(전자금융거래계약의 체결 및 해지) (좌 등)</b></p> <p><b>제5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</b>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은행은 접근매체의 갱신 또는 대체발급 등을 위하여 이용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 <p>2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 <p><b>제6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~제12조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(생략)</b></p> <p><b>제13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</b></p> <p>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/p> <p>1. 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공인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 <p>2.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b>제14조(거래의 제한)</b>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</p> <p>2. ~ 3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경우에는 이용자의 신청이나 본인확인 없는 때에도 발급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갱신 또는 대체발급 예정일전 6월 이내에 사용된 적이 없는 접근매체에 대하여 이용자로부터 갱신 또는 대체발급에 대한 서면(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 포함) 동의를 얻은 경우</p> <p>2. (좌 등)</p> <p>③ (좌 등)</p> <p><b>제6조(접근매체의 발급 및 등록)~제12조(거래지시의 처리기준) (생략)</b></p> <p><b>제13조(추심이체의 출금 동의)</b></p> <p>① 은행은 추심이체를 실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식에 따라 미리 지급인으로부터 출금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.</p> <p>1.은행이 지급인으로부터 서면(전자서명 또는 은행이 정한 전자서명이 있는 전자문서를 포함합니다. 이하 이 조에서 같습니다)에 의하여 출금신청을 받는 방법</p> <p>2.(생략)</p> <p>② ~ ③ (생략)</p> <p><b>제14조(거래의 제한)</b></p> <p>① (좌 등)</p> <p>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적 장치를 통한 계좌이체의 전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.</p> <p>1. 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 유효기간이 만료되었거나 (삭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가 취소되었을 때</p> <p>2. ~ 3. (좌 등)</p> <p>③ (좌 등)</p>	<p>법규 개정 내용 반영 및 “공인” 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 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용어 수정</p> 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“은행이 정한 인증서”로 용어 수정</p>

전자금융거래 기본약관 개정 대비표

개정전	개정(안)	비고
<p>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<b>공인인증서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 재발급·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을 통한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(서면동의 포함)를 거쳐 전자의 절차(서면동의 포함)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(생 략)</p> <p><b>제15조(거래의 완료) ~ 제33조(준거법) (생 략)</b></p>	<p>④ 제2항의 경우에 이용자는 <b>(삭 제) 은행이 정한 인증서</b> 재발급·유효기간의 연장 또는 은행이 정한 인증방법을 통한 계속 사용의사 확인 등의 절차(서면동의 포함)를 거쳐 전자의 절차(서면동의 포함)를 거쳐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</p> <p>⑤ (좌 동)</p> <p><b>④ 제15조(거래의 완료) ~ 제33조(준거법) (좌 동)</b></p>	<p>“공인”인증서 제도 폐지에 따라 “은행이 정한 인증서”로 용어 수정</p>
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개정약관 적용 여부: 적용